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조문별 개정이유서

1. 한자어 및 외래어로 쓰던 법령용어 정비

(안 제4조 제2호 나목, 안 제47조, 별표15 제1호, 별표15 제2호, 안 제53조 제1항, 안 제54조, 별표 1의2 제1호 나목, 별지 제3호 서식 개정)

가. 개정 이유

- 법령 용어 개선을 위해 한자어인 법령용어를 우리말로 고치고, 외래용어에 우리말 뜻을 병기해 국민들의 이해도를 제고

나. 개정 내용

- 한자용어로 된 관광숙박업자 등록대장 기재사항을 정비(안 제4조 제2호 나목)
- 한자용어로 된 관광종사원 외국어시험 종류 표기를 정비(안 제47조, 별표 15 제1호, 별표 15 제2호)
- 관광종사원 등록, 자격증 발급 관련 규정에서 한자용어를 우리말로 정비(안 제53조 제1항)
- 관광종사원 자격증 재발급 관련 규정에서 한자용어를 정비(안 제54조)
- 유원시설업 시설 및 설비 기준 중 외래용어인 원치에 우리말 뜻 병기 (별표 1의2 제1호나목)
- 전문휴양업 및 종합휴양업 시설별 일람표 중 한자용어를 정비(별지 제3호 서식)

대상 조항	현행	개정
제4조 제2호 나목 (수상관광호텔업 등록대장)	총톤수·전장 및 전폭	총톤수·전체 길이 및 전체 너비
제47조, 별표 15 (관광종사원 외국어시험)	불어, 독어, 일어	프랑스어, 독일어, 일본어
53조 제1항, 제54조 (관광종사원 자격증 발급)	탈모	모자를 쓰지 않은
별표 1의2 제1호 나목 (유원시설업 설비 기준)	원치	원치(중량물을 끌어올리거나 당기는 기계설비)
별지 제3호 서식 (전문·종합휴양업 시설별 일람표)	엽견	사냥개
	정고	보관참고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국민들의 법 이해도 제고, 접근성 강화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2. 하계 성수기 물놀이형 유원시설 수질검사 주기 단축

(안 별표10의2 제7호 개정)

가. 개정 이유

- 하계 성수기에 물놀이형 유원시설 이용객이 집중되어 수질관리 강화가 필요해짐에 따라, 수질검사 주체를 명확히 하고 7월과 8월 하계 성수기 수질검사 주기를 단축하여 이용객의 안전을 도모

나. 개정 내용

- 7월과 8월에 한해 물놀이형 유원시설의 수질검사를 월 1회 이상 실시하도록 개정(현행은 항목별로 1년에 1회 또는 분기별 1회 실시)

[별표10의2] 물놀이형 유원시설업자의 안전·위생 기준(제39조의2 관련)

7. 사업자는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3조 본문 및 제4조 제2항의 각호에 따라 사업장 내 풀의 수질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다음의 수질기준을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7월과 8월 하계 성수기의 경우에는 월 1회 이상 수질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해수를 이용하는 경우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2조 및 별표 1 제3호라목의 II등급 기준을 적용한다).

다. 안전요원의 자격은 해양경찰청장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에서 발급하는 인명구조요원 자격증을 소지한 자, 대한적십자사나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수영장 관련 체육시설업협회 등에서 실시하는 수상안전에 관한 교육을 받은 자 및 이와 동등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만 해당한다. 다만, 수심 100센티미터 이하의 풀의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업종별 관광협회 또는 기관에서 실시하는 수상안전에 관한 교육을 받은 자도 배치할 수 있다.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매년 여름마다 보도되는 물놀이형 유원시설(워터파크)의 수질 관리 미비에 관한 기사에 대응하여 국민들의 불안감을 완화하고,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국민들이 물놀이를 즐길 수 있는 제도적 기반 조성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물놀이형 유원시설 수질관리 강화 관련 수질검사 주기단축 등을 내용으로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 의결(2019. 1월)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법령 용어 현행화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3.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기관명 현행화(안 별표 10의2 10호 다목 개정)

가. 개정 이유

-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기관명 현행화 필요

나. 개정 내용

- 국민안전처장관 → 해양경찰청장

[별표10의2] 물놀이형 유원시설업자의 안전·위생 기준(제39조의2 관련)

10. 사업자는 이용자의 안전을 위한 안전요원 배치와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